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7. 1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 7. 8

다. 상정일자 : 1992. 7. 8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별첨안 참조

나. 주요골자 : 별첨안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별첨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었음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다. 표결결과 : 재석위원 10명(전원찬성)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처리

질의·답변사항

● 한정동위원 질의

본법 시행규칙에 상수도 보호구역외 지역내의 정화조 청소대상이 단독주택과 대중이 이용하는 관광업소 및接客업소도 년1회로 되어 있음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행정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청소과장 답변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시 연구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업위원 질의

조례안 제16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감천1동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청소과장 답변

상위조례에 감천1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하위조례에 지정하였으며 금후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시는 추후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 강정순위원 질의

정화조 청소업자가 법과 조례에 규정된대로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청소과장 답변

정화조 청소업자 지도감독 사항이므로 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